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문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2. 27.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대상업체

업체명	등록업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처분근거	처분내용 (처분일)
(주)금륜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 사업 (인천 계양 2005-8-4)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번길 *-* (가좌동)		
(주)에코위시 건설	철근·콘크리트공 사업 (인천서구2018-09 -0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 청라롯데캐슬 201동 ***호 (청라동) [변경법인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 강8로 386, 제9층 제 ***-**호(구래동, 김 포센트럴프라자2차)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등록말소 (2024.12.19.)

2. 공고기간 : 2024. 12. 27. ~ 2025. 1. 13.

3. 기타사항

-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고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 또는 온라인(<http://incheon.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로과(032-560-4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